

구 분	창업중소기업 감면(「지특법」 §58의3)	반환공여구역 감면(「지특법」 §75의5)
감면취지	창업 비용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제진흥
감면대상	창업 기업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신설 기업
적용범위	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수도권 경제 집중도 완화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개정前)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정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 (개정 前)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반환 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
 - └ (개정 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반환 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 ※ 다만, 수도권 내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은 제외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